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합1106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석, 이재명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율

담당변호사 김광영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21. 2. 5. 체결된 주식회사 E에 대한 200,000,000원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와 F 사이에 2021. 2. 5. 체결된 주식회사 G에 대한 100,000,000원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준소비대차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21. 1. 28. H과 ‘H은 원고 A에게, 준소비대차 약정금 채무 727,500,000원을, 2021. 2. 5.까지 405,000,000원, 2021. 2. 9.까지 322,500,000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 F은 위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 H, D, F 등의 촉탁에 따라 2021. 2. 1. 법무법인 I 작성 2021년 제311호로 ‘H, D, F이 위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B은 2021. 1. 28. H과 ‘H은 원고 B에게, 준소비대차 약정금 채무 436,000,000원을 2021. 1. 28.까지 100,000,000원, 2021. 1. 29.까지 36,000,000원, 2021. 1. 31.까지 300,000,000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 F은 위 H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B, H, D, F 등의 촉탁에 따라 2021. 2. 1. 법무법인 I 작성 2021년 제310호로 ‘H, D, F이 위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F, D의 정산금채권 양도 등

1) F은 2020. 12. 10. 피고에게, F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정산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F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0. 12. 11. G에 이 사건 제1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G에 도달하였다.

2) D은 2021. 2. 5.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정산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라 하고, 해당 계약을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21. 2. 5. E에 이 사건 제2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E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들의 D, F의 정산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경과

1) 원고 A는 2021. 2. 15. 위 가의 1)항에서 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F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F이 E 및 G에 대하여 가지는 각 339,243,000원의 정산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3264)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2. 18. E과 G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 A는 2021. 2. 16.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이 E과 G에 대하여 가지는 각 169,761,000원의 정산채권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3227)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2. 17. G에, 2021. 2. 18. E에 각 송달되었다.

2) 원고 B는 2021. 2. 16. 위 가의 2)항에서 본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D이 E과 G에 대하여 가지는 각 96,812,500원의 정산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21타채53259)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1. 2. 18. E과 G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사해행위 취소

원고들은, 2021. 1. 28. D과 F에 대한 보증채권을 각각 취득하였다. 그런데 D, F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그들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민법 제406조에 따라 D, F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무권리자 처분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은 E과 G에 대한 정산채권을 보유한 F, D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H이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는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에서 보았듯, 원고들의 F에 대한 각 보증채권은 2021. 1. 28. 발생하였고,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은 그 이전인 2020. 12. 10.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들의 F에 대한 각 보증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H이 이미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이전부터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F은 H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어, F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F에 대한 각 채권이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이전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F이 H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채권양도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기초가 성립해 있었다거나, 위 채권이 성립할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F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 체결이 원고들의 F에 대한 각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보았듯 원고들의 D에 대한 보증채권은 각 2021. 1. 28. 발생하였다. 또한 D은 각 원고들에 대하여 총액 합계 1,163,500,000원(=원고 A 727,500,000원 + 원고 B 436,000,000원)을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J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D은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원고들과 D이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2021. 1. 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2. 5.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 체결은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D의 E에 대한 정산채권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는 피고가 운영하는 바로지급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D이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초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D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비스, 즉 ‘이용자가 G, E 등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한 물품대금의 정산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 플랫폼이 정한 정산금 지급 예정일보다 먼저 정산금을 지급받는 서비스’(이하 ‘바로지급서비스’라 하고, 해당 서비스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돈을 ‘바로지급금’이라 한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로 피고는 2021. 2. 9.부터 2021. 2. 16.까지 D에게 바로지급금 66,56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가 위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수수료 1,010,373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는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피고가 지는 위험에 비하여 매우 적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다.

③ 원고들의 D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통지는 이 사건 제2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E이나 피고로서는 D이 원고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3) 이처럼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무권리자 처분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당시 D, F의 각 서명과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 F의 각 서명은 그 필체가 서로 달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계약을 D, F이 아닌 H이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D, F이 운영하는 각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H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 제1, 2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정산채권의 실질적 권리자이거나, 적어도 D, F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화, 판사 선승혜, 판사 성재혁